

수·해양 전문계고 인정도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과제

박창언 · 차철표[†]

(부산대학교 · [†] 부경대학교)

An Attempt to the Legal Problems on the Approved Books in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Chang-Un PARK · Cheol-Pyo CHA[†]

(Pusan National University ·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legal issues and some question to solve on the approved books in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following. First, It discuss the legal meaning on the approved books. The meaning of the approved books means the curriculum books are subject to an approval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use term in case where there exist no government-designated books and authorized, or where it is difficult to use term o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m. Second It deals with the legal issues on the approved books in fisheries and marine science education. The main issue is in harmony with the regimentation and self-regulation of education. This matter is the legal problems on the power for the standards of the textbooks approval and the rights for the organization of the textbooks. Third, It treats the problems of the approved books in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The problems is system of statute and concept of approved books, the rights of nation and local government, standards of approved books, and writing and practical use of approved books. I generalize legal issues on the approved books in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Hence, it is necessary to deeply study each subject in the legal aspect of the approved books in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Key words : Approved books,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Textbooks

I. 서론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중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 제도는 국정과 검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인정교과서의 사용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정교과서는 빠른 사회적 변화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보급하며,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등장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더불어 단위학교의 자율성

[†] Corresponding author : 051-627-9362, cheolppyo@hanmail.net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현재까지 이루어지면서 인정교과서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정 교과서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그 주체도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인정 교과서의 확대는 단순히 교과와 인정교과서의 수를 늘리는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정과 검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 교과서 제도의 기본 틀을 수정하여야 하는 큰 과제가 된다. 인정교과서에 대한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고, 국정과 검정을 보충한다는 인정교과서의 의미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와 관련된 법제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는 일이 된다. 수해양 분야의 교과서 역시 인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이러한 제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과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수해양 교과서 제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교과용 도서의 의미와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1. 교과서의 의미와 인정도서

교과서에 대한 직접적 정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학생용의 서책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 전자저작물 등 전자화되어 있는 사항까지 반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화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과서를 만드는 근간이 되는 것은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이 된다. 교과서는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러

한 점은 국가 교육과정의 해설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1999: 23). 이러한 해설서 이외에도 기존의 연구 성과물에서는 교과서를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만든 서적 등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이 교과서를 만드는 근간이 됨을 밝히고 있다(윤팔중, 1989: 87). 법적인 구조에서도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교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며,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의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이 교과서가 된다.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교과용도서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을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제시된 교과용도서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의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 규정 제2조 제1호에서는 교과용도서를 지도서와 교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교과서는 교과용도서에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 동 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의할 때 단위학교의 장이 교과서를 선정할 경우, 국정교과서를 먼저 사용하여야 하

고, 국정교과서가 없을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검정한 검정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정과 검정이 아닌 교과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정교과서 또는 검정교과서가 없을 때에는 인정교과서를 교과용도서로 대응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기본이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교과서제도가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는 교육에서의 국가의 통제와 단위학교 자율성의 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교육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개성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교육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국가에서 일정수준의 교육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내용의 많은 부분에 관여할 경우 통제적 성격을 띠게 되며, 반면 학생의 개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자율성을 요구하게 된다.

국정과 검정 교과서는 국가적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통제적 성격을 띠게 되며, 인정교과서의 경우에도 인정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통제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발행제가 보다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국정과 검정교과서에 비해 인정교과서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가 된다. 수·해양 교과서 역시 기존에는 국정과 검정교과서 위주의 골격을 이루고 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를 활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과거와 달리 단위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와 교과서 제도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은 교육에 대한 기본이 되는 조항으로서 교육에 대

한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의무교육,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4항과 제6항은 국가의 행정권력이나 정치권력이 교육에 개입하여 자의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 교과서 제도와 관련해서는 교과서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을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률주의는 국가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위적 장치로서 교육활동, 교원, 교과용도서 등에 관한 표준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정치세력이나 교육행정권한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교육제도 등에 관한 기본 골격의 형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형성권에 속하는 본질성 이론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성 이론은 입법권의 기능과 입법권에 인정되는 형성의 자유와 관련된 이론으로서,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생활에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의 기본 방침은 원칙적으로 입법권의 기능사항에 속하며, 입법권은 헌법과 법의 정신을 지키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법률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제도의 중요한 골격은 사회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 사회 전체의 이념과 조화되는 가운데서 형성되고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 사항의 조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는 헌법 이론상 제도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제도보장은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일정한 정치·사회적 제도를 헌법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

가 보장되면, 입법부는 그러한 제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를 지게 되며, 그 제도를 헌법 규정에 위반하여 법률로써 폐지하거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됨을 뜻한다. 그래서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활동 기반의 구축이 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서 교육제도의 형성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세력이나 행정권한에 의한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여 교육의 본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입법부에 의한 교육제도의 폐지 및 왜곡 가능성을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헌법 제31조는 별도로 교육재정과 교원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교과서 제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1993)에서는 헌법이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의 일환인 교과서 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고 있다.

Ⅲ. 수해양 교과서 제도의 법적인 구조

1. 수해양 교과서 제도의 변천 개요

교과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내용을 담아내는 일종의 그릇으로서 교육과정에 근거해 만들어지게 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분리되어 별도로 논의될 수 없는 성질이기도 하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해 작성이 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이 교과서를 만드는 기본 요체가 되며, 단위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자율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수해양 교과서 제도의 변천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해양 분야의 교육과정 변천사항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교육과정의 시작은 광복이 되던 1945년부터 일반적으로 잡고 있다. 대한민국은 광복이 되면서 미군정 시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우리의 손에 의해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실업교육의 경우도 미군정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미군정시대의 실업교육은 농·공·상 및 수산 등 중등교육분야에서 중견 기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시기에는 초급실업중학교와 고급실업중학교로 나뉘어 3년 완성을 위한 실업교육과 6년 완성을 위한 실업교육으로 구분되었다(함종규, 2004: 194). 수산과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 있었으며, 초급중학교의 구체적 과목은 수산개론, 어로, 수산제조, 수산증식, 수산생물, 어선,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고급중학교는 수산개론, 해양기상, 어로,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선, 수산생물, 수산법제경제,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수·해양 교과서는 아직까지 검·인정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탓으로 자유출판되는 서적 중에서 적절하게 선별하여 사용하여 학교마다 통일성이 없었고, 부적당한 교재도 공급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의 수·해양 교육은 중등단계의 교육에서 이루어졌으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에서 전 교과목의 30% 이상을 실업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 중학교 또는 실업 고등학교의 명칭을 관할 수 있다”(교육법 제157조)고 하여 독립된 실업 중·고등학교를 별도로 설립하여야 할 필요를 없게 하였다. 교육법에서는 실업교육에 대한 별도의 교육목적은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실업교육은 농·공·상·수산으로 나누어 교육하였는데, 수산교육은 해안과 육수, 해류와 산업과의 관계, 해양과 기상·수산생물·어업·수산증식·수산제조·항해, 기관 및 실습 등이었다. 실업학교는 국어, 사회생활, 수학, 과학의 일부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같이 정식 교과서를 채택하였지만, 실업 교과서는 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과서나 교재 없이 진행되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1999)과 함종규(2004)의 한국교육과정변천사의

사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수·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치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기 실업교육은 일반 중·고등학교 제도와 다름없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실시하였으며,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 교과목의 30% 이상을 실업 기술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농업·공업·상업·수산·가정·보건 등을 관(冠)하여 실업고등학교라고 호칭하였다. 당시 수산업은 어로과, 수산제조과, 증식과의 3개 학과 이외에 가정 및 보건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었다. 교과서는 교육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초등학교는 국정을 원칙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를 병용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실업가정과 중 수산의 학생용 정규 교과서는 국정으로 하였으며, 일반고등학교 실업가정과 학생용수산 교과서는 검정으로 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목의 종류에 따라 농·공·상·수산·가정 등의 명칭을 관한 고등학교로 유별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와 별도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게 한 대신 교육과정에서 실업전문 교과목의 비중을 높이고, 실습을 강화하였다. 수산계 교과서는 4종이 국정으로 편찬되었으며, 1963년 10월부터 교과서의 검·인정을 실시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1971년, 1973년, 1976년에 걸쳐 세 차례 개정을 하게 된다. 수산계 고등학교는 장차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과 실제적 능력을 길러 숙련된 기술자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계 고등학교는 장차 해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과 실제적 능력을 길러 숙련된 중견 기술자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영역별 목표가 설정되었다. 1976년에 개정된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편제 및 단위배당 기준에서 보통필수과목 이수단위는 58단위이며, 수산·해양계 교과의 선택과목은 8-44단위로 되어 있었

다. 1973년에 편찬된 실업계 교과서 중에서 수산·가공2와 수산·가공 종합실습은 국정교과서로 편찬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실업계열의 교육목표, 교과편제 등을 대폭 개정하여 1984년부터 시행토록 하였는데, 새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이수단위를 총 192-204단위로 상향조정하였다. 종래 별도로 편성하였던 실과계 교육과정을 인문계 고등학교와 통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목표도 고등학교 교육목표로 통합하여 진술하였다. 수산·해양계 전문 교과목의 편제와 단위배당은 필수 5개 과목 36-76단위, 선택 24과목 46-82단위로 총 이수단위는 82-122단위였다. 당시 발행된 국정 교과서는 1982년과 1983년에 각각 51책이고, 1984년에 62책, 1985년에 70책, 1986년과 1987년에 47책이었다. 제5차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부분개정으로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수산·해양계 전문교과목의 편제와 단위배당은 필수 5개 과목 38-74단위, 선택 37과목 44-84단위로 총 82-122단위였다. 당시의 수산·해운 교과서는 국정도서(1종 도서)였으며, 42종 48책이 출간되었다. 지도서는 4종 5책이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성격, 교육적 요구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계열구분 없이 82단위 이상을 선택, 이수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수산·해운 교육과정은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전문성 강화와 학습분량 및 내용수준의 적정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맞는 내용의 정선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였다. 학과는 냉동기계과, 선박운항과를 신설하였고, 전문교과는 현행 37과목이 28과목으로 조정되었다. 수산·해운계 교과서는 모두 국정(1종 도서)로 발행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2, 3학년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실업계 전문교과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상 수산·해운계 12개과를 제시하였

다. 이러한 경향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제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에서는 수해양 분야의 교과서 33종 모두가 인정도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천 과정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져 왔으며, 초기에는 일반계에 실업계에 해당되는 교과가 존재하였으나, 전문교과로 분화·발전되었다. 수해양 교과서는 국정과 검정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변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에서는 국정과 검정에 해당되는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고, 33종 모두 인정도서로 전환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2. 인정제도의 법적 구조와 문제

인정교과서 제도의 직접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 그리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각종 조항들이다. 이들 조항이 직접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조항과 직·간접적 관련을 맺고 있다.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들 조항 위주로 설명하되, 기타 관련 조항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법적인 구조와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는 학교에서 인정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하여야 하는 점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에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용도서 제2조 제6호에서는 인정도서는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3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국·검정 도서가 없을 경우 인정도서를 사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4조에서 제17조에 이르기까지는 인정도서의 신청, 인정 기준, 인정도서의 인정, 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규정 제40조에서는 권한의 위임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도서의 인정, 인정기준의 결정, 인정취소 처분, 내용 수정의 요청, 가격 조정의 권고, 청문 등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할 때, 인정도서에 대한 전반적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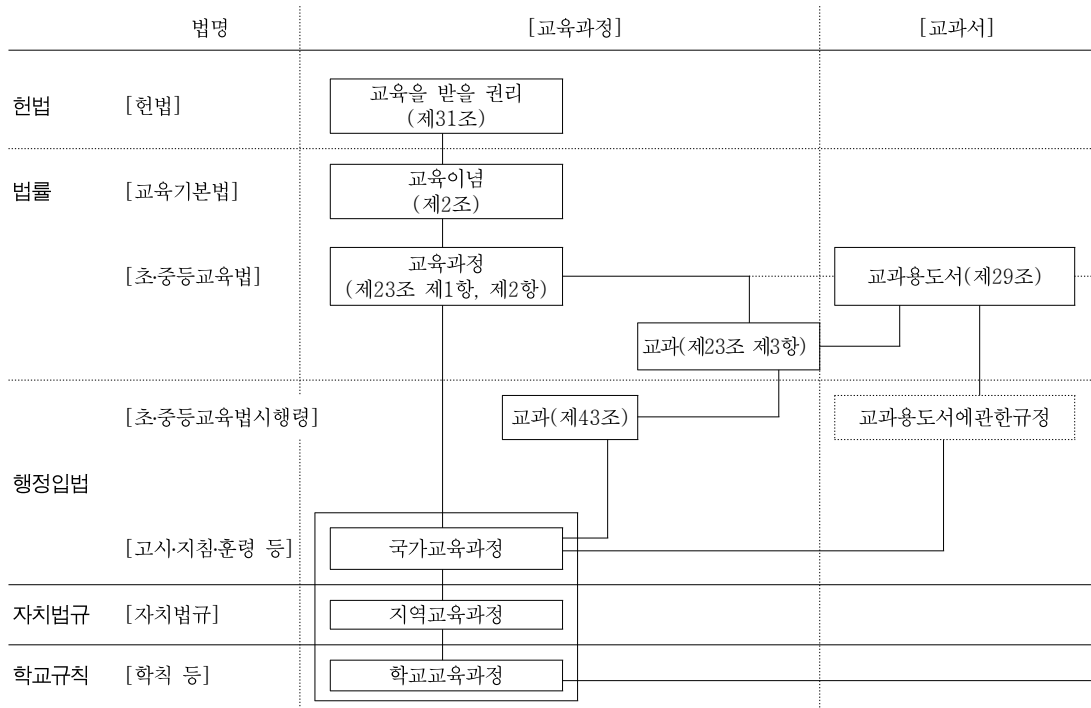
이러한 규정에 의한다면, 인정도서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국·검인정 도서가 없는 경우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정도서는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 정책에 맞추어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11년 8월 16일에는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도서 구분 고시’(제2011-29호)에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대부분을 인정도서로 전환하였으며, 2012년 3월 26일에는 고등학교 사회, 실용경제 과목의 신설과목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분이 필요하여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개정 고시’(제2012-149호)를 하였다. 이들 내용에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는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교과서를 제외한 교과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중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가 인정도서이며, 수해양 분야의 교과서 33종 모두가 인정도서로 되어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해 마련되지만, 현행 법적 구조에서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교과라는 근간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교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3조 제3호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교과에 대한 규정 전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일임하고 있어 여타의 교육관련 주체의 행사가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수해양 분야의 교과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의 근간에 의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이 결정되고, 교육감은 이 범위 내에서 광의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적인 근거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인정도서 관련 법규는 교육기본법과 헌법에 제시된 교육에 관한 조항과 관련을 맺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교과서와 관련된 직접적인 용어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2조 제2항에서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성중시의 교육원칙을 선언하면서 교과서는 이에 부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을 규정하여 교과서도 홍익인간의 이념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교육기본법 상위의 법으로서 헌법에서는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더불어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에서 교과서 제도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구조의 제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교과서 관련 법적 체계

법적인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시되는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정도서가 중등학교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검정도서의 보충이나 보완 교재로서의 개념이 부적절하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도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시행은 교육감이 하도록 하고 있어 권한 배분의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이 부분은 국가 교육과정과의 관계를 고려해 국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셋째, 인정기준이 시·도별로 마련하게 되어 있지만, 국가 공통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정별 차별화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넷째, 교과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등과 관련된 자율성이 그다지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IV. 수·해양 교과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과제

1. 법령의 체계와 인정도서의 개념

여기서는 수·해양 교과서 제도와 관련된 법적 구조에서 법령 체계상의 문제와 인정도서의 개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수·해양 교과서 제도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수·해양 교과서 제도와 관련해 전체적인 법령 체계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국가적 차원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이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거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해양 교과서에 대한 구분 고시를 하고 있다. 전반적인 법령의 체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과서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

교과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주어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3조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되는 10개 교과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교과'라고 함으로써 교과의 개폐 여부가 전적으로 중앙 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지 여부에 따라 수·해양 교과가 존치될 수도 있으며, 폐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과의 근간이 교과부 장관에 의해 정해지게 됨으로써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설정 역시 교과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해 만들어지게 되므로, 수·해양 교과서는 교과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고려한다면, 교과부 장관에게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아래의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고 고시의 수준으로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제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것인지 검토의 과제가 된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부 장관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이러한 법적인 체계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정도서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정과 검정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교과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보충이나 보완을 위해서 인정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부 장관이 구분 고시한 중등학교 교과서는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정도서로 되어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국·검정 교과서가 없는 경우나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교과서가 인

정도서로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타당하지 않다. 인정도서의 확대 정책으로 인해 보통 교과가 인정도서로 전환되었고, 전문교과도 모두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인정도서의 수나 비율이 현저하게 많아진 시점에서 보충이나 보완 교재로 개념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검토하여야 할 주요 과제는 인정도서의 개념에서 보충이나 보완의 교재라는 성격이 이제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국정과 검정도서 다음으로 인정도서가 단위학교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위계적인 구조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국정과 검정 도서는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구분이 모호한 것이다. 자유발행제에서 교재로 활용하는 경우 인정도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여야 한다.

2.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의 부적절성

현재 교과와 교과서에 대한 권한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반면,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교육감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계로 여기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구분하여 중앙과 지방에 대한 권한 배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법적인 구조에서는 광의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권한을 배분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로 뒷받침 된 것은 실질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부터이다. 이들 교육과정 시기의 국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지침을 살펴보면, 각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대부분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 교육감이 국가의 기준 하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행정권에 관한 헌법 제66조의 규정과 정부조직법 제24조 제1항은 중앙정부에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을 주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제117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을 주고 있다. 현행 법령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유·초·중·등 학교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 권한 행사시 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에 관한 권한이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제의 정비가 요구되는 것이다.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이러한 권한 행사가 외형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지침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가 교육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제의 전반적 검토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의 권한을 보다 명료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교과서 제도에 대한 권한 배분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 교과서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과와 교과서 제도는 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만이 존재하고 있다. 지역적 특색을 살려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면, 새로운 교과에 대한 신설과 더불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교육감에게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과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교과서 제도는 권한의 위임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도서에 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해양 교과서가 이제까지 국정이나 검정으로 존재하였지만, 이번에는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

는 수해양 교과서의 저작과 발행 및 공급 등에 대한 사항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교과서의 결정 권한이 교과부 장관에게 있고, 국·검·인정의 교과서 구분에 대한 사항도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면,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교과나 교과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교과부 장관이 교과와 교과서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교육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관례적 형태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인에는 교육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을 명료하게 해 줄 수 있는 법 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데 기인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그리고 단위학교장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3. 인정의 기준 마련

인정도서의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인정도서의 심사기관과 심사 기준 그리고 인정도서의 심사범위 등이 해당된다. 우선 인정도서의 심사기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정도서 연구에 의하면, 인정도서를 담당할 조직이나 기관에 대해서 인정도서를 특정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업무 추진 전담 부서의 설치나 상위의 수준에서 인정도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조직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직속으로 인정업무 전담 기관을 조직하여 수행하는 방안 등이 적절하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 위탁하는 방안 등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다(심재호, 2011: 71).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질 관리의 충실성을 위해서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에서의 검·인정도서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정도서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에 관한 권한 행사의 측면

에서 위임의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교육감의 사무로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 업무는 중앙정부의 출연기관에서 맡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시도 교육청에 인정도서 업무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수해양 교과서는 부산지역에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 등이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이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인정의 심사 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인정의 심사 범위에 대한 사항부터 보면, 교과서 검정과 마찬가지로 가장 침해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교육권과 국가 교육권의 대립이 있어왔다. 국민측 입장에서는 오기나 오식 등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는 교육내용의 당부에 대해서까지 심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국민측과 국가측의 대립을 일으킨 검정 심사의 범위는 인정심사의 범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국가가 교육내용에 관여하여 그 당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주로 사회과(역사포함)가 해당될 것이다. 수해양 교과서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교과서 내용의 당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교과서 내용의 당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결과적으로 교과서를 저작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인정의 심사 범위는 오기, 오식 등 극히 제한적인 사항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정의 심사 범위는 교과별 또는 사례별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인정의 심사기준에 대해서 보면, 텔파이 조사의 결과는 교육청과 과목별 교과용 도서의 유형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의 심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

다(심재호, 2011: 72). 인정의 심사 기준이 교육청 별로 개별화하기 보다는 표준안을 구성하되, 교육청별, 과목별 인정도서의 심사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교육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다는 이유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교육의 일정수준보다는 교육의 다양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교과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유리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국적이거나 전세계적 표준을 활용하는데 교과서 저자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저술하기 힘들 것이며, 그러한 경우 단위학교에서 채택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인정의 심사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심사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면, 인정도서로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수해양 교과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수해양 분야의 고등학교가 적기 때문에 전국적 통일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는 것이 의미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전국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적 특수성이 감안된 심사기준의 설정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4. 저작권자와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사항

교과서 저작과 채택 및 사용은 교과서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의 권한과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가 갈등을 빚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국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교과서 저작을 국가가 행하고, 1교과 1책 주의를 택하는 현실에서 여타의 교육 관련 주체가 배제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권리도 침해될 소지가 크다. 검정의 경우는 민간이 저작을 하지만, 검정의 심사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인정의 경우 역시 민간이 저작을 하지만, 인정의 심사 주체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국정과 검정의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수해양 교과서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교과서의 선택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반면 수해양 분야와 같이 특수한 성격이 있는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를 저작할 수 있는 전문가가 국내에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교과서를 저작한다고 하더라도, 단위학교에서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과서를 저작한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교과서 저작하는 비용이나 출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도 무관하지 않게 된다. 인정도서와 관련하여 인정심사와 감수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를 걱정하는 다른 교과 분야와는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교과서 저작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교과서를 만들지 않는다면, 단위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학습자의 교과서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학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 학습자의 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선택권을 확장하고 보장하는 것은 학습권에 대한 보장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선택권의 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있을 것이다. 수해양 분야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고비용 저효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접근될 성격을 교과서는 아니다.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과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수한 분야의 교과서의 경우는 인정도서로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국정이든 검정이든 인정이든 해당 교과서가 있어

야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정도서를 확대한다는 취지가 반드시 단위학교나 교육관련 주체에 대해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과서 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정도서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관련 주체의 참여나 권리 또는 권한이 보장되는 측면에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교과부 장관에 독점되어 있는 교과나 교과서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관련 주체가 참여하고, 이들의 요구가 집약되는 형태로 적절한 교과서 제도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수해양 교과서의 저작과 채택 및 사용은 이러한 점에서 교과서 제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해양 교과서를 인정제로 하더라도 교과서 저작이나 사용 및 가격 책정 등에서 국가적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제도 시행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교육현장에서 교과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교육과정에 의해 만들어지고,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비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더 크다. 이제까지 수해양 교과서 역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움직여왔고,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에 부합되는 형태로 움직여왔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더불어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그 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고, 교과서 제도 역시 변화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중등학교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가 인정도서 체제로 변화되었다.

국정과 검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인정도서로의 전환은 교과서 제도와 관련된

법제의 정비를 요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과서 정책의 변화에 대응해 법제가 완전하게 정비된 것은 아니다. 모든 교과에 걸쳐 제기되는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교과 차원에서 정비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법제로 정책적 변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에 대한 법률의 정비도 필요하며, 개별 교과의 성격에 따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수해양 교과서 역시 인정제도로 변화됨으로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타의 교과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이 과도해 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제한적인 수요로 인해 교과서 저작과 채택 및 사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정제도로의 변화에 대응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 방안이 수해양 교과서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모두 충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해양 교과가 일반교과와 달리 특수한 분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지만, 완전한 대안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미 인정 교과서 제도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보다 완전한 대안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강기주·나현미·정향진·허강·이승구(1999).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서 변천과정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개정 고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1999).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총론-,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I), 서울: 교육부.

- 김삼곤·홍철훈·차철표(2008). 우리나라 전문계열 고등학교 교과서의 해양관련 내용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0(2), 222~235.
- 박창언(2004). 교육내용에 관한 법적 문제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16(2), 77~97.
- 박창언·주동범(2010). 수산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2(1), 25~37.
- 심재호·윤지훈·박지현·최숙기(2011).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정교과서 질 관리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윤팔중(1989).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성-법·령·고시·규정·지침서의 분석-,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제38집, 87~10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인정도서 제도 개선 워크숍,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함종규(2004). 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헌법재판소(1993) 헌법재판소판례집 제4권(1992). 서울: 헌법재판소.
-
- 논문접수일 : 2012년 11월 23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2년 12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20일